

第234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2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11月5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노동부)

○朴赫圭 위원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한 부문은 주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근본취지를 위해서도 시행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목표 의식없이 노사 간의 합의에만 의존해오다가 결국 양측의 주장을 짜깁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노동부의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원칙 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노사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정부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며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시행조차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작 근로시간 단축의 시험대가 될 산업현장에서는 이 문제의 득실을 가늠하는 논란이 이제야 격렬하게 시작되는 분위기이고 과연 그 동안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왔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方鏞錫

(朴赫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주50시간 이상 근로하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변)

- 정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임
- 정부안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질 수 있으나
 - 시행일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적용된 후에는 근로시간 격차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봄
- 아울러, 대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도 노사합의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 조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용시기 이전에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신규채용근로자 장려금제도 신설 및 고용보험요율 인하, 시설확충 등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임

(질의)

2. 정부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목표의식 없이 노사 간 합의에만 의존해 오다 결국 양측 주장을 짜깁기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고 노동부가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원칙 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변)

-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이라는 2000년 10월 기본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 2년여 동안 충분한 노·사·정 논의를 통해 세부쟁점을 대부분 해소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며
- 정부안은 기본합의의 원칙과 노사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음

- 정부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외에도 휴가사용촉진 방안과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신설하여 실제 휴가사용률을 제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근로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있음

(질 의)

3. 노사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며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2년 여 동안 노·사·정이 충분히 논의했고 대부분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음
- 최종합의가 안되었다고 그간 논의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협상대표인 노사단체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음

(질 의)

4. 산업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야 격렬하게 시작되는 분위기이고 그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왔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오랜 기간동안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왔다고 봄
 - 아울러, 그간 언론보도와 각종 홍보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노사와 일반국민들에게도 논의내용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봄
-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각기 내부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사합의에만 의존하여 입법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이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논의가 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